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구미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5. 10.



경 상 북 도

통 보·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경력경쟁임용 시험 채용 부적정

구미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년도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시설(토목) 9급 6명 등 총 9명의 공무원을 채용하였다.

[표 1] 구미시 ☆☆☆☆년도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 현황

직렬	식품위생	의료기술	시설(토목)
직급	9급	9급	9급
인원	1명	2명	6명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 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에는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는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나 임용추천을 미룰 수 있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구미시는 아래 [표 2]와 같이 ☆☆☆☆. ☆. ☆☆. ‘☆☆☆☆년도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경상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호, ☆☆☆. ☆. ☆☆.) ** 합격자 \$\$\$이 군복무의 사유로 임용유예(☆☆☆☆. ☆. ☆☆. ~ ☆☆☆☆. ☆. ☆☆.) 신청을 하자, ☆☆☆☆. ☆. ☆. 임용유예 결정을 하였으며, ☆☆☆☆. ☆. ☆☆. 합격의 유효기간이 지난 \$\$\$을 지방**서기보에 신규 임용하였다.

[표 2] \$\$\$의 신규임용 유예 현황 “생략”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법령에 제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격의 유효기간(1년) 내에 신속히 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합격 후 1년 이내에 임용되지 아니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임용유예)에 따른 병역복무로 인한 임용유예 사유를

적용하여, ☆☆☆☆. ☆.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인 \$\$\$의 임용유예 신청을 부적절하게 승인하였으며, 이후 ☆☆☆☆. ☆. ☆☆.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의 군복무가 종료되어 합격 유효기간 내 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신속히 임용하지 않았고, 합격의 유효기간이 지난 \$\$\$을 ☆☆☆☆. ☆. ☆☆.에 지방**서기보로 임용하였다.

그 결과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이 상실된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임용되었다.

2.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구미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 ☆. ☆☆. 경상북도의 민원 조사 결과에¹⁾ 따라 징계처분 요구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운영하는 등 징계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3] 민원조사 처분에 대한 징계 감경 처리 현황 “생략”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²⁾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르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1)  관련 부적정으로 ☆☆☆☆. ☆. ☆☆. 경징계 및 훈계 처분요구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에는 부작위·직무태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견책~파면’으로 징계의결토록 함

따라서 구미시 가과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하여 구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대상자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감경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구미시 인사위원회는 ☆☆☆☆. ☆. ☆. 구미시 나과 지방**주사 \$\$\$가 ‘○○○○ ○○○○○○○ ○○○○○’ 관련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담당팀장으로서 공법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징계처분³⁾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이전의 상훈⁴⁾을 감경 사유로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의 담당자인 지방**주사보 \$\$\$은 ☆☆☆☆☆. ☆. ☆. 개최된 구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업무 담당자로 회의에 참석하였고, 위원장이 \$\$\$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전력에도 불구하고 표창 감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을 때, 징계처분 이전의 상훈으로 해당징계에 대하여 감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징계감경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검토 없이 부적절하게 징계업무를 처리 하였다.

그 결과 구미시는 ☆☆☆☆. ☆. ☆☆. 경징계를 요구한 \$\$\$에게 ☆☆☆☆. ☆. ☆. ‘불문경고’로 처분을 함으로써 관련 비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다.

3) ☆☆☆☆. ☆. ☆☆. 음주운전으로 감봉1월 처분, ☆☆☆☆. ☆. ☆.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 처분

4) ☆☆☆☆. ☆. ☆☆. ○○○○○○○ ○○○○○ 유공(행정자치부), ☆☆☆☆. ☆☆. ☆☆. 경상북도 모범공무원(경북도지사)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인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 효력이 없이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④ 관련자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 제도 운영,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1.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과소 적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 제7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에 따르면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80시간 이상, 종전 기능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연간 30시간 이상을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미시에서도 매년 ‘상시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직급별 연간 최저 이수 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구미시 직급별 연간 최저 이수시간 현황

구분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6급 이하	종전 기능·별정직 공무원
전체 의무이수시간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교육훈련부서주관 집합교육	7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5급 이하의 일반직의 경우 연간 최저 이수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종전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30시간 이상으로 반영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하고 미이수자의 경우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종전기능직공무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연간 최저 이수 시간을 30시간으로 적용하여 승진요건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산정하였고, 나팀 상시학습 담당자 지방**서기 \$\$\$, 지방**주사보 \$\$\$, 지방**서기 \$\$\$은 승진의결 대상자의 교육훈련 실적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상시학습 이수시간이 미충족된 \$\$\$ 등 9명을 상시학습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상시학습 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승진심사를 위한 자료로 위 부서 다팀에 제출하는 등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정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2]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과소설정에 따른 승진임용 현황 “생략”

그 결과 실제로는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8급→7급 \$\$\$ 등 4명과 **9급→8급 \$\$\$ 등 5명이 승진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II.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오류 또는 부정 입력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고, 동일 직급에서 3년 이내 동일 과정을 중복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된 실적 등에 대하여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이를 통해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 및 적정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팀 담당자 지방**서기 \$\$\$과 지방**주사보 \$\$\$은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는 등 교육훈련 실적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상시학습 이수시간이 미충족된 승진후보자 \$\$\$ 등 4명을 상시학습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상시학습 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승진 심사를 위한 자료로 위 부서 다팀에 제출하는 등 교육훈련 실적 확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현황 “생략”

그 결과 동일직급에서 동일과정을 중복 입력하여 실질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8급 \$\$\$ 등 4명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승진임용되었다.

3.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5급 교육이수실적에 미반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II.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편에 따르면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적용하고 인사교육훈련부서(인사과 등)에서는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을 입력하되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인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교육 이수 실적은 승진 직급인 5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한 해당자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승진임용 등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승진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 ☆☆. ☆☆, ☆☆☆☆. ☆. ☆.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4급 승진에 따른 승진심사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대상자들의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이수시간을 누락한 채 승진에 필요한 교육이수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지방**서기 \$\$\$은 실제 승진에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한 [☆☆☆☆. ☆☆. ☆☆.인사위원회] **5급 \$\$\$, [☆☆☆☆. ☆. ☆.인사위원회] **5급 \$\$\$ 승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기록한 ‘상시학습 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부서 다팀에 제출하여 상기 2인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⁵⁾하도록 하였다.

[표 4] 4급 승진임용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현황 “생략”

그 결과 **5급 \$\$\$과 **5급 \$\$\$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충족 하였음에도 미충족으로 표현되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BBB, CCC는 훈계 처분하시고, DDD, EEE, FFF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5) ☆☆☆☆. ☆☆. ☆☆. 구미시인사위원회 회의록과 ☆☆☆☆. ☆. ☆. 구미시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상시학습 미충족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함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주민지원사업 종류 등 조례 명시 미이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의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여건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아래 [표 1]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개정된⁶⁾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 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물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지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 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 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한다.	

*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별표3 발췌

6) 「폐기물시설축진법」 2024.3.5. 개정, 2024.9.6. 시행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 기준·방법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경상북도 나과에서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년 ☆월 ☆☆일, ☆☆☆☆년 ☆월 ☆☆일 2차례에 거쳐 안내⁷⁾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 아래 [표 2]와 같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생필품 지원사업, 가전제품 지원사업 등 11개 지원사업을 조례에 구체적 명시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년 ☆월 이후) “생략”

2. 보조사업자 계약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08호)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7) 경상북도 나과-****(☆☆☆☆, ☆, ☆☆.), 경상북도 나과-*** (☆☆☆☆, ☆,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⁸⁾를 이용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⁹⁾에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에서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부당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명절맞이 생필품 지원 사업 등 18건 359,459천 원의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자가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교육기관전자조달 시스템,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

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1. 천재지변, 재난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사업수행자를 임의로 선정해 1인 견적에 의한 구매계약을 진행하여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율¹⁰⁾ 적용 시 총 43,135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주민지원사업 부적정 계약 현황 “생략”

3.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사용절차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10) 용역·물품구매는 88% 하한율 적용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년부터 ☆☆☆☆년까지 가구별 식료품 지원사업 등 28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사·검수 절차 및 증빙 자료 누락, 물품대장 미작성 등 정산서류에 대한 관련 자료가 적정하게 첨부하지 않아 그 집행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정산검사 시 서류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표 4]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현황 “생략”

4. 보조금으로 지원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3항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호에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에 대하여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은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는 5년 동안 반기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보조금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중요재산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보조사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년부터 ☆☆☆☆년까지 가전제품, 마을방송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 중요재산의 관리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표 5] 중요재산 취득 현황 (취득가액 50만 원 이상) “생략”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 CCC, DDD, EEE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사후관리 소홀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가.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징수 관리 소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상속 취득세 세원 관리를 위하여 사망자 내역, 상속대상 재산 자료, 주민등록상의 상속대상자 등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대사하고, 상속대상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직권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구미시 ☁☁동 ***-*** 등 8건의 재산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 등 14명의 상속 취득세 3,475,5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1] 상속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생략”

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소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6 및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비상장 법인 주식의 지분별 변동 내역 등 과세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대사하고, 과점주주가 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직권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년부터 ☆☆☆☆년까지 주식회사 \$\$\$\$ 등 5개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한 \$\$\$ 등 13명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 23,803,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2]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생략”

2.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가. 생애최초 주택 감면 대상자의 매각·임대 등에 대한 취득세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및 취득 가액에 따라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 등 17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41,689,3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3] 생애최초 주택 감면대상자 매각·임대 추징대상 명세 “생략”

나.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의 미사용 등에 대한 취득세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창업일 당시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년부터 ☆☆☆☆년까지 \$\$\$ 등 4개 업체가 창업중소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미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234,622,32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4]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자 매각·임대 등 추징대상 명세 “생략”

그 결과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징수되어야 할 취득세 총 34건, 287,504,850원이 세원의 발굴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과·징수가 누락된 취득세 287,504,850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1] 상속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생략

[붙임 2]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생략“

[붙임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정대상 명세 ”생략“

[붙임 4]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추정대상 명세 ”생략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토석채취허가지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불법산지전용 등의 복구 설계서 승인, 복구준공검사 등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미시 가과에서는 구미시 ☞☞면 ☞☞리 산**-*번지 일원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쇄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하였고, ☆☆☆☆년 허가기간 중 아래 [표 2]와 같이 허가구역 경계를 침범한 불법토석 채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다.

[표 1] ☞☞리 산**-* 번지 토석채취허가 등 내역 “생략”

[표 2] ☞☞리 산**-* 번지 일원 불법토석채취(산림훼손지) 현황 “생략”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1항에 따르면 ①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②토석채취 허가를 받았거나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③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르면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복구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1항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 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¹¹⁾에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및 제42조의2에 따르면 복구 설계서 작성 및 감리자 배치기준 등이 아래 [표 3]과 같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별표5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표 3] 산지복구 설계, 감리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설계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감리	산지복구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자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재구성

- 11)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3. 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대상)에 따르면 아래 [표 4]와 같이 허가, 신고 또는 지정면적일 경우 산지복구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4] 산지복구 감리 대상

구분	사업종류	감리대상	비고
감리	산지복구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 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범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산지관리법 산지복구 감리 대상 및 범위 재구성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1항에 따르면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을 복구설계서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미시 가과에서는 구미시 숲속면 숲속리 산**-*번지 일원 토석채취 허가지 및 불법토석채취지 등에 대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각각 산지 복구설계 승인 및 복구 준공처리 하였다.

[표 5] 산지복구 설계 승인 내역 “생략”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토석채취허가지, 불법토석채취지, 산지일시사용신고지 등에 대하여 복구의무자가 산지복구시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각 면적에 적합한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인지 확인하고 산지복구 감리 대상일 경우 감리 용역계약 등을 확인한 후 산지복구 설계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기 지역은 동일한 복구의무자가 동일지역 및 동일시기의 토석채취 허가지와 그 경계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토석채취 한 구역, 토석채취의 부대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지 복구 구역으로서 같은 토석채취허가 구역의 하나의 복구사항으로 설계 및 감리 시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구미시 ☁☁면 ☁☁리 산**-*번지 일원의 토석채취 허가 및 불법토석채취구역 등의 복구지가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6]과 같이 산림기술특급 공학기술자가 아닌 설계작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산림기술고급 공학기술자가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복구설계서를 부적정하게 승인하였고, 토석채취허가 등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감리 대상임에도 감리 없이 복구설계서를 승인하는 등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복구 적정성 검토 없이 공사 시행 및 준공처리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6]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 부적정 내역 “생략”

그 결과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가 설계서를 작성하거나 감리 없이 복구설계서 등이 승인되는 등 산지복구 업무가 시행되었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나과
내 용	

구미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관내 지하수 시설에 대해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예외적¹²⁾으로 제외되는 경우나, 같은 법 제8조의 지하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의3 및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장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기간까지 최근 6개월 이내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개발·이용기간이

1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끝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에 미리 연장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이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의사가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하며, 실제로 이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진 원상복구를 안내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하여야 하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이 되도록 지하수 보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별표1]과 같이 감사일 현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총 164개소의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연장허가 안내 후 개발·이용자가 연장허가 신청 없이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 파악 및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추진한 사실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별표2]와 같이 최초 허가일자가 ☆☆☆☆.☆.☆☆.으로 기입되어 있는 137개소를 포함하여 총 150개소의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리 대장에 개발·이용자, 직전 허가 유효 종료일 등 다수의 대장 기입 사항이 빠져 있고, 연장허가 통보 대상에도 누락하는 등 상기 연장허가 유효기간 만료 건을 포함하여 총 314개소(전체 지하수 허가시설 449개소 대비 69%)의 지하수 허가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지하수법」 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5년의 검사주기로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고, 사후관리의 이행을 위해 이행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종료한 때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를 받은 15일 이내에 사후관리의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하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검사주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사후관리 이행신고 및 종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1] 허가기간 유효기간 내 지하수 이용 허가시설 사후관리 미시행 현황 “생략”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감사일 현재 허가기간 유효기간 내의 지하수 이용 허가 시설 48건 및 상기 1번 지적사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 164건 중 아래 [표 2]의 사후관리는 실시한 18건을 제외한 146건과 연장관리 대상에서 누락한 150건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검사주기가 도과하거나 사후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시설 344건에 대해서 사후관리 이행 신고서 및 이행종료신고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표 2] 연장허가 누락 대상 중 사후관리 확인 현황 “생략”

3. 이행보증금 예치 관리 부적정

「지하수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로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허가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 역시 연장하여 예치받아야 하고,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았을 경우 연장허가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연장허가가 신청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행보증금을 활용하여 원상복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별표3]과 같이 109건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시설에 대해서 허가기간을 연장허가 하면서도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연장하여 받지 않았고, 상기 1번 지적사항에서의 연장허가 미신청 건을 포함(연장허가 미신청

건에 대하여 방치함으로써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연장조치 불가)하여 향후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시급한 원상복구 상황 또는 원상복구 의무자 불분명으로 지하수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4.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시 협의 미이행

「지하수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때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따른 하천 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라 한다)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지 않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 취지를 저해하였다.

[표 3]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미협의 현황 “생략”

5.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아래 [표 4]와 같이 검사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표 4]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용도	구분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경우 :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경우 :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3년마다 1회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3년마다 1회
농업·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이상	3년마다 1회

※ 자료 : 「지하수법」 일부 발췌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9호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대상자가 검사 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지하수법」을 1차 위반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나과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지하수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검사 주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및 수질검사 미이행 사후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 대장상의 이용 정보가 상당수 누락되어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부서인 가과와 협의하여 지하수 시설 이용현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화하는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감사일 현재 전체 수질검사 대상 2,020개소 중 1,026개소(50%)가 수질검사 주기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상당수가 수질검사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과태료 부과 등 수질검사 이행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주관부서인 가과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하수 이용현황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명을 하면서도 지하수 수질검사 정상화를 위하여 주관부서인 가과와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용자 주소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214건의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정 주소로 수질검사 이행 안내를 통보하는 등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5] 수질검사 미이행 시설 관리 현황 “생략”

그 결과 지하수 이용·시설의 무단 이용 및 방치, 청소 및 검사 없는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 수질기준 미달 지하수 사용이 발생하여도 행정 통제를 원활히 할 수 없는 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지하수 연장 허가 만료 시설을 포함한 지하수 개발·이용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현행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미이용 시설, 사후 관리 미이행 시설, 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 행정조치 및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미연장 건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허가 유효기간 만료 지하수 시설 현황 “생략”

[별표2] 허가시설 관리 누락 현황 “생략”

[별표3] 지하수 허가 기간 연장 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연장 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면, 나면, 다면
내 용	

구미시 다면 등 3개 부서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취득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이 경우 면적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시·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 취득요건, 농지의 소유 상한 이내 여부, 제출한 농업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가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023년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발급 기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제5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 하여야 함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다면 등 3개 부서에서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을 받은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 총면적의 1,000㎡ 초과 여부, 농업진흥지역 여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의 실현가능성 등을 확인 심사하고,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를 항공사진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어야 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통지를 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다면 등 3개 부서에서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을 받은 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 총면적의 1,000㎡ 초과 여부, 농업진흥지역 여부,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부적정하게 7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내역 “생략”

특히, 구미시 다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리 ***-#번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출장결과보고서(☆☆☆☆.☆.☆☆.)에 적합의견으로 기재 후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도 아래 [사진대지]와 같이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가 그대로 존치되고, 어떠한 경작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다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이후 실시된 ☆☆☆☆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해당 필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농작물경작”, 처분대상여부를 “미대상”, 원상회복명령대상을 “미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등록한 사실이 있다.

[사진대지] 다면 ☞☞리 ***-#번지(네이버 로드맵 기준)¹³⁾ “생략”

13) 감사일 현재까지 ☞☞리 ***-#번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된 내역 부존재

그 결과,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농지법의 기본취지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호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의무부과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는 **훈계** 처분하시고, EEE, FFF, GGG, HHH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및 소관부서 미통보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과징금 부과 처분 미이행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¹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및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4)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이를 감경할 수 있으며, 「구미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정」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과징금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보호법 업무안내서¹⁵⁾에 따르면 사법기관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청소년대상 술·담배판매를 한 업소에 대한 처분 통보를 송부하게 되는 경우, 영업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법상의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상의 처분이 선행되고, 술은 식품위생법상의 처분이 우선되며, 다만 소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영업형태의 업소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발 통보 시에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업형태의 업소는 관할 검찰청 등에 처분결과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과징금 감경여부를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부터 ☆☆☆☆. ☆. ☆☆.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구미경찰서로부터 통보된 17개 업소(편의점, 소매점)¹⁶⁾에 대하여 ☆☆☆☆. ☆. ☆. 감사일 현재까지도 과징금 17,000천원 부과 처분을 미이행하고 방치하였다.

[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 “생략”

1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1699(’22. 5. 25.)

16) “2022년 청소년 보호법 업무안내서”에 따르면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술 판매의 경우 타법에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청소년 보호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소관부서 미통보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시장은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을 할 수 있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¹⁷⁾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발 통보 시 담배사업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는 업소라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 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 ☆☆.부터 ☆☆☆☆. ☆. ☆.까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구미경찰서로부터 통보된 담배소매업소 7개소¹⁸⁾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나과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17)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18) 담배 판매 2개소 / 담배 + 주류 판매 5개소(1. 과징금 부과 처분 미이행과 중복)

[표 2]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소관부서(나과) 미통보 현황 “생략”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 ☆☆. ☆.부터 ☆☆☆☆. ☆. ☆☆.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구미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식품접객업소 3개소 및 청소년출입 금지업소 4개소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다과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소관부서(다과) 미통보 현황 “생략”

그 결과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하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를 출입하게 한 업주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통보된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17,000,000원을 부과하시고, 소관이 아닌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로 통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 CCC, DDD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미이행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미이행

「여객자동차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사상자 수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정지를 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사상자 수에 따라 운송사업의 감차조치, 운행정지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별표 3의2]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는 과태료를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르면 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신규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회 50만 원, 2회 75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¹⁹⁾으로부터 법령 위반 사항이 통보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검토한 후, 적정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법령을 위반한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를 통보받았음에도 ☆☆☆☆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08건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1]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생략”

2.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관리 소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운전자의 정보, 교통법규 위반사항, 운전적성정밀검사, 범죄경력의 기록·관리사항 등을 관리전산망에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6조의2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은 운전업무 종사자격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19) 「여객자동차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이행하거나 관리시스템 상 미등록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행정처분을 이행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관리시스템 상 행정처분 미등록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행정처분 미등록 사항 중 28건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이미 등록한 90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진행내역을 현행화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2]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미등록 및 미현행화 내역 “생략”

그 결과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제정된 법 취지가 훼손되어, 국민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23,500,000원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고, CCC, DDD(병합), EEE, FFF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୧୧୧୧୧୧ ୧୧୧୧୧୧୧୧୧୧୧୧ ୧୧୧୧୧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୧୧୧୧୧୧ ୧୧୧୧୧୧୧୧୧୧୧୧ ୧୧୧୧୧୧”을 추진중에 있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୧୧୧ 하천횡단 교량설계 부적정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점용목적별 관련 서류²⁰⁾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20)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첨부 서류이며, 공작물 신축·개축·변경의 경우 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획서

할 경우에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고려²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하천의 명칭,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도지사의 권한 중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의 점용 허가 및 고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의 공작물 중 교량(세월교 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는 위임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하천에 교량(세월교 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9)」 및 「2024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환경부)」에 따르면 교량의 길이는 하천폭 이상이어야 하고, 하도 내 설치되는 교각 개수는 최소화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교량을 설치할 때에는 교량설치에 따른 상·하류 500m 저점별 수위변동 상황, 계획 홍수위에

21)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서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

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및 “**○○○○○○○○○○○○○○○○○○ ○○○○○**”을 추진하면서 기존 교량 깨기 시 발생하는 철근 고재를 내역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비 49,502천 원²⁴⁾(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비탈면 보호공에 과다하게 줄떼를 반영하여 사업비 18,901천 원²⁵⁾(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여 합계 68,403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교는 하천기본계획의 계획 하폭에 적합하게 보완 설계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68,403,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4) ♣♣♣ : 46톤 15,312천 원, ♣♣ : 104톤 34,190천 원

25) ♣♣♣ : 5,951천 원, ♣♣ : 12,950천 원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나과
내 용

구미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표] 용역 현황 “생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에 따르면 “품셈”이란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 작업에 소요 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하며, “표준품셈”이란 표준품셈관리기관이 공표한 품셈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2021. 2. 10.))」 제3장 실시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3-2 추진과정 1. 계획수립권자 4)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할 경우 본 품셈의 정비계획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 및 나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할 경우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가과의 경우 “~~○○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주)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적정 대가²⁶⁾의 약 9.7%로 조정하여 18,000천 원으로 부적정하게 저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과의 경우 “                        

한편 ☆☆☆☆. ☆. ☆☆. 구미시에서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를 하면서 전차용역을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라고 공고하고,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사업수행
능력평가서가 제출된 25개 업체 중 ☆☆☆☆. ☆. ☆. \$\$\$\$\$(주)와 수의계약한 “♣♣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만 전차용역으로
인정²⁸⁾하여 \$\$\$\$\$(주) 외 2개사가 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26) 산출된 적정 용역 금액은 186,500천 원(구미시 제출자료)으로 산정

27) 산출된 적정 용역 금액은 102,700천 원(구미시 제출자료)으로 산정

28) 사업수행능력평가가서 제출된 25개 업체 중 \$\$\$\$\$(주) 외 2개사만 전자용역이 인정되어 1.7점(참여기술인 1.0, 전자용역수행능력 0.7)을 획득

“○○○○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제출된 25개 업체중 ☆☆☆☆. ☆☆. ☆☆. (주)\$\$과 수의계약한
“○○○○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만
전차용역으로 인정²⁹⁾하여 (주)\$\$ 외 4개사가 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계약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 CCC, DDD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9) 사업수행능력평가가서가 제출된 25개 업체 중 (주)\$\$ 외 4개사만 전차용역이 인정되어 1.7점(참여기술인 1.0, 전차용역 수행실적 0.7)을 획득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도시 성장과 교통 혼잡 해소,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등 지역 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도시계획도로 사업 현황 “생략”

1. 설계도서 검토 미흡에 따른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구조물공 비계적용 부적정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제4장에 따르면 발주청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고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설계도서에 시스템비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구조물축조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작업발판이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으로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관비계의 조립도 및 구조계산서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토록하고 이와 관련한 설계의 경제성 또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강관비계를 반영하여 사업 시행중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미흡하게 이행하고 강관비계 적용으로 사업비 1,935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사업 추진중이다.

나. 공사원가 과다 계상 공사용 자재 설계반영 부적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등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사용량 및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무사용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를 추진 시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여부, 사용용도, 사용량, 사용가능 여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하여 순환골재를 미반영하여 사업비 34,409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절감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다.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구조물 깨기 시 발생하는 철근 고재를 미반영³⁰⁾하고 비탈면 보호공에 과다하게 줄땀을 반영하여 사업비 6,73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사비 부적정 계상 현황 “생략”

30) 기존 암거깨기시 발생된 철근 고재 수량 7.3톤

2.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부적정 계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2절 제6항에 따르면 설계에서 별도 계상한 정액비용 항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예정가격에서 정액으로 반영된 항목이므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비정산 또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제7항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계약 후 조정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해당 제비율 항목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함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적용절차를 준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 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비용(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순공사원가상 공사 추진 일반 공종에 계상하였고 그 결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목적성 비용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계약 후 임의 조정 금지 및 정산 의무 항목에 대하여 부당하게 낙찰률이 적용되어 아래 [표 3]과 같이 사업비 12,843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원가계산 부적정 계상 현황 “생략”

그 결과 과다 계상된 사업비와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사업비 40,716천 원(제경비 포함)이 사업관리 미흡과 정산절차 소홀로 인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40,716,9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 CCC(병합)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시 정 요 구

제 목 ㉮㉮㉮ ㉮㉮㉮㉮㉮㉮ ㉮㉮㉮㉮ 사토 매각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 [표 2]와 같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사토(막자갈, 토사섞인 모래)를 매각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생략”

[표 2] 사토 매각 현황 “생략”

1. 사토 매각 기준단가(최저입찰가) 결정 부적정

「골재채취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골재³¹⁾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법」 제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할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3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 상태에 부존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³²⁾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 추진하는 “㉸㉸㉸ ㉸㉸㉸㉸㉸ ㉸㉸㉸㉸”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하천부지 토석)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설자재 등 수익목적으로 반출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각에 필요한 기준단가는 골재(모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시추조사를 시행하여 세부 토질을 분류한 다음 골재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품질이 적절한지 품질시험을 시행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술평균한 가격을 입찰 기준단가로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에서 발생한 사토가 공사 과정에서 유용되지 못하고 남는 잉여 토사가 아닌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³³⁾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³⁴⁾ 변경 없이 골재선별·파쇄업으로 등록한 자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입찰공고³⁵⁾하였으며, 매각하기 위한 입찰 기준단가 결정 시 사토가 골재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시추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정가격의 결정은 공정한 감정평가 없이 골재가격 산출기준과 관련 없는 경상북도에서 고시하는 하천 점용료³⁶⁾를 입찰 기준단가로 결정한 후 매각공고를 추진하였다.

32)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33) 구미시 가과-***** (☆☆☆☆, ☆☆, ☆) ㉸㉸㉸ ㉸㉸㉸㉸㉸ ㉸㉸㉸㉸ 사토처리(안) - 결재 : 나 국장 전결

34) ㉸㉸㉸ ㉸㉸㉸㉸㉸ ㉸㉸㉸㉸으로 인한 하천부지 일시점용 및 공사로 인해 발생한 토사는 하천구역 밖으로 반출 조치

35)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공고시 시스템 가입자에게만 이메일로 공고내용이 알려짐

36) 하천점용료(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모래 : 2,060원/m³, 자갈 : 1,800원/m³, 막자갈 : 1,540원/m³

그 결과 아래 [표 3] 과 같이 구미시 다과에서 시행한 “♀♀지구 구미시 직영 골재장 준설토 매매³⁷⁾”가격대비 낮은 입찰기준단가(기준단가 2,060원/㎥, 계약단가 2,420원/㎥)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시추조사 및 품질시험을 이행하지 않은 사토에 대한 가격 결정으로 입찰 기준단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표 3] ♀♀지구 구미시 직영 골재장 준설토 매각 현황 (☆☆☆☆년 이후) “생략”

2. 사토 매각 절차 부적정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일반 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온비드)³⁸⁾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매각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시행하여 보다 투명한 절차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국유재산이 아닌 일반 사토로 규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 하지 않고 토석정보 공유시스템³⁹⁾으로 인터넷 매각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더욱이 입찰참가자격(골재 선별·파쇄업 등록)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공개경쟁입찰(현장입찰) 방법으로 참여

37) 준설토 매각 대금 기준단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 후 낙찰자 결정

38) 국유·압류·수탁재산 등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구매포털시스템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

39)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2025. 8. 8. 이후 토석 매각공고 기능 중단(공공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은 국유재산으로 처분 시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고)

인원을 한정(제한)시켰다.

그 결과 다수의 업체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신문 공고 및 지정 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하지 않은 매각 추진으로 2개의 업체만 참여를 하는 등 사토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사토 매각 조건 이행 및 설계변경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의 변경) 규정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공사 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공사물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사업부지 내 법정보호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가 제내지 반출로 진행⁴⁰⁾됨으로 설계변경 시 당초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던 흙쌓기(노체) 품 약 5억 원(순공사비)은 감액하였으나, 사토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당초 사토 운반거리를 L=1km → 3.2km로 변경하여 약 5억 원(순공사비)을 증가한 후 설계변경 하였다.

더욱이 입찰공고 시 사토매각 조건에 따르면 시공사에서 상차 및 3.2km를 운반하도록 사토 매각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사토운반을 이행하지 않고 사토를 매입한 (주\$\$\$\$에서 사토를 운반하고 있다.

그 결과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에도 계약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시공사에서 이행하지 않은 사토운반(3.2km)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사토 매각 계약조건 위반

“~~○○○○~~ ~~○○○○○○○○~~ ~~○○○○○○~~” 「사토 매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르면 ~~○○○○~~ ~~○○○○○○○○~~ ~~○○○○○○~~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매매함에 있어 사토 매각자 및 매입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토 매매계약 일반조건」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매입자가 구매한 사토에 대해 제3자 양여 또는 매각을 할 경우, 또한 제3자에게 전가 또는 대행할 경우, 그리고 매각자가 지시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0) 대구지방환경청 마과-****호(☆☆☆☆.☆☆.☆☆.)에 따라 ~~○○○○~~ ~~○○○○○○○○~~ ~~○○○○○○~~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요청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사토 매매계약 일반조건 사항에 대해 사토 매입자가 성실히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매입자((주)\$\$\$\$)가 매입한 사토에 대해 지정받은 사토장 4곳(①.구미시 ☞☞면 ☞☞리, ②.구미시 ☞☞동 **, ③.상주시 ☞☞면 ☞☞리, ④.구미시 ☞☞면 ☞☞리) 중 2곳(상주시 ☞☞면 ☞☞리, 구미시 ☞☞면 ☞☞리)에서 해당 소재지에 선별·파쇄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주)\$\$\$\$으로부터 받은 사토를 직접 선별·파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매매계약 일반조건에 해당되는 사항(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사토운반 미이행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하시고,(시정)
- ③ 사토에 대한 제3자 양여 또는 매각 등 매매계약 일반조건 사항에 대하여 매입자의 계약조건 이행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위 처분과 관련하여 사토 매각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⑤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하시고,
- ⑥ 관련자 BBB,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나과, 다과, 라과
내 용	

구미시 가 본부 나과, 다과, 라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등 21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수의계약 체결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농공단지 직접생산품목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제6호, 제25조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10.에 따르면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전문공사의 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나과, 다과, 라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1인 견적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경우 분할발주를 검토하여 공사의 경우 관련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구미시 사업발주부서인 다과, 라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부속물품과 설치공종을 포함하여 사실상 공사계약을 관급자재(물품)구입으로 나과에 수의계약 요청하였고,

구미시 계약부서인 나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생산 가능한 물품만 수의 계약하지 않고,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 및 설치공종을 포함하여 계약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분할발주 대상 물품현황(계약기준) “생략”

2. 물품납품 확인 및 공사금액 결정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1-가-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를 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다과, 라과에서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있는 공종에서도 업체 견적가격으로 검토하여 물품가격 책정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도 농공단지 직접생산 외 물품 설치 등에 수반되는 물품이 해당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 ♣♣ ♣♣♣♣ ♣♣♣♣(♣♣♣♣♣♣) 등 21개 물품의 구입을 추진하면서, 물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 및 설치 공종을 포함하여 부적절하게 물품구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정가격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회계질서의 문란을 야기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 CCC, DDD(병합), EEE, FFF, GGG, HHH, III(병합), JJJ(병합)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나과
내 용	

구미시 가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절차⁴¹⁾를 진행하였다.

[표 1]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생략”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제12절-제1관-3에 따르면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장-제12절-제3관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제안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참여자는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1) 평가기준 확정 → 평가위원 모집 공고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정성평가 → 평가결과 공개 → 공법선정자 통지

따라서 구미시 나과에서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자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제안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법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제안참여자에게는 공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공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위원회가 심도 있고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정량평가 방법 부적정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2관-6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 [표 2], [표 3]과 같이 위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표 2]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자료 : 구미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공사비 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평가 요소	등 급	평 점
공사비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 자료 : 구미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같은 기준 제4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며,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 등 2개 부서에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별표]에 따라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했다.

가. 정량평가 항목 부적정

그런데도 구미시 나과에서는 ‘

[표 4] 정량(객관적)평가 기준{☞☞☞☞☞(☞☞-☞호)정비공사} “생략”

[표 5] 정량(객관적)평가 기준{♣♣(♣♣-♣호)정비공사} “생략”

나. 공사비 평가방법 부적정

또한, 구미시 가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 6], [표 7]과 같이 ‘’ 등 2개 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사비 평가기준을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인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⁴²⁾ 대비 85% 미만 및 70% 미만으로 공사비를 절감하여 제안한 참여자에게 최저점을 부여하도록 평가기준을 확정·공고 후 제안서⁴³⁾를 접수하였다.

[표 6] 공사비 평가(자체 평가기준) “생략”

[표 7] 공사비 평가(자체 평가기준) “생략”

그 결과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과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안참여자의 설명과 위원회 위원의 질의 기회가 박탈되어 공법이 심도 있게 평가되지 못하였고, 제안참여자의 예산 절감 노력이 소홀히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42)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 모든 공법제안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의 평균금액

43) 공법 제안서 :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주 의 요 구

제 목	♣♣♣♣♣♣ ♣♣♣♣♣♣ ♣♣♣♣ 외 1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나과
내 용	

구미시 가 본부 나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 외 1건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생략”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부적정

[표 2]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생략”

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제12절 제1관 3에 따르면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3관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참여자⁴⁴⁾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나과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신기술·특허공법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시 후보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 없이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사업부서 임의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평가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신기술·특허공법 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현황 “생략”

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정량 및 정성평가 방법 부적정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제2관 6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 [표 4], [표 5]와 같이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44) 제안참여자 : 해당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표 4]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자료 : 구미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공사비 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평가 요소	등 급	평 점
공사비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 자료 : 구미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같은 기준 제4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며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2관-7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나과에서는 “♀♀♀♀♀♀♀♀ ♡♀♀♀♀♀♀♀♀ ♡♀♀♀♀♀♀♀♀”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별표]에 따라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정성평가 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정량평가 기준 적용 부적정

그런데도 구미시 나과에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 적용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과정 없이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아래 [표 6]과 같이 시공실적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공법선정에 필요한 정량평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게 하였다.

[표 6] 정량(객관적)평가 기준 “생략”

또한 위 부서에서는 “                          ”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사비 평가기준을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대비 최저 비율(80% 미만 등)의 공사비를 제안한 참여자에게 최저점(6점)을 부여하는 등 아래 [표 7]과 같이 자체적으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법제안 평균 공사금액보다 저렴하게 공사비를 제안한 제안참여자에게 최저점을 부여하도록 평가기준을 확정·공고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표 7] 공사비 평가(자체 평가기준) “생략”

2) 정성평가 기준 적용 부적정

그리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 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점수로 평균 산정하여 정성적 평가분야 점수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토지수용재결을 위한 행정절차 미이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나과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을 추진하면서 ☆☆☆☆. ☆☆. ☆☆.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위 절차 없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절차를 진행하여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 ☆☆. ☆☆.에 기존 고시를 폐지한 이후 재고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토지수용재결 절차가 지연되는 등 발주청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하수관로 검사(CCTV 조사, 수밀시험) 미실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19. 6.)」에 따르면 하수관거 설계 시 시공이나 사업준공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지방서에 언급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경사검사, 수밀시험, CCTV조사 등을 검사품⁴⁵⁾에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수밀검사 및 CCTV조사 등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⁴⁶⁾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나과에서는 하수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품질검사 용역(CCTV조사 및 수밀시험 등)을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에 대한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을 발주는 했으나, 공사(1차 준공분)에 대한 CCTV조사 및 수밀시험을 미실시하는 등 하수관로 품질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45) 하수도표준지방서에 따르면 시공단계에서는 오수관로 전체에 대해 경사 및 수밀검사, CCTV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단계에서는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가구의 5%에 대해 수밀검사, CCTV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46) 환경부 하수 67712-549호(2003.5.22.)로 하수관거 품질시험 시 분리 발주 또는 직접시행 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나과에서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여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를 추진하면서 포장복구 후 차선도색에 대한 재료비(페인트 등)가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데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산정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산정하여 관급자재로 구매할 경우보다 사업비 약 51,200천 원(제경비 포함)이 추가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설계변경 관리 및 시공 확인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나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 ♣♣♣♣♣♣ ♣♣♣♣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관리를 위한 EGI 웬스 및 CCTV 미설치에 따른 사업비 3,7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검토 없이 감액 조치하지 않았다.

나. ♣♣♣♣♣♣ ♣♣♣♣♣♣♣♣♣♣ ♣♣♣♣♣♣♣♣♣

그리고 “♣♣♣♣♣♣♣ ♣♣♣♣♣♣♣♣♣♣ ♣♣♣♣♣♣♣♣♣”을 추진하면서 ① 빗물펌프장의 사무실집기는 공사와 관련 없는 물품으로 자산취득비로 산정하여야 하나, 공사비에 포함하여 시설비로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 18,119천 원(제경비포함) 과다계상, ②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에 앵커볼트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 삭제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11,762천 원(제경비포함) 과다계상, ③ 현장 확인 및 관련서류 검토 결과, 백호 등 실투입 토공장비로 공사비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3,511천 원(제경비포함) 감액 등 총사업비 33,392천원(제경비 포함)을 검토 없이 감액 조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추가 산정된 사급자재 등의 사업비 88,292천 원(제경비 포함)이 사업관리 미흡과 정산절차 소홀로 인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88,292,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고, DDD(병합)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구미시 ☁☁읍 ☁☁리 ***-*번지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등 2건의 건축허가를 아래 [표 1]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 1] 건축허가 현황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 및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와 제64조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⁴⁷⁾은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⁴⁸⁾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현장 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와 제30조의3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7)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본다)의 비율

48)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축법령에 위반한 행위이며, 설계자들이 이러한 하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축허가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상 허가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지하층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하층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건폐율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지표면을 성토하여 지상층을 지하층으로 설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구미시 가과에서는 건축허가 처리 시 지하층의 산정 여부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건축사 \$\$\$은 구미시 읍읍 리 ***-*, ***-*번지 상 허가사항 변경허가⁵⁰⁾ 신청에서 건폐율 제한 조건(자연녹지지역 20% 이하)을 회피하여 기존 건축허가에 비해 건축물의 규모를 증가⁵¹⁾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옹벽설치 및 대지를 성토하여 지상층을 지하층으로 설계하였음에도 설계도서가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구미시 가과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건폐율

50) ☆☆☆☆-신축허가-** : 구미시 읍읍 리 ***-*번지 / ☆☆☆☆-신축허가-** : 구미시 읍읍 리 ***-*번지

51) 건축규모 변경사항

- ***-*번지 : 연면적 254.88㎡ → 314.88㎡, 동수 1동 → 2동
- ***-*번지 : 연면적 250.88㎡ → 490.56㎡, 동수 변경 없음

제한 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옹벽설치 및 성토를 계획한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대지 조성 및 지하층 판단의 적정성 검토를 누락하여 설계도서의 수정이나 보완 등의 조치 없이 건축허가(변경)을 처리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림 2, 3]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지하1층은 지상층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하1층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2] ***-번지 현장사진 및 종단면도 “생략”

[그림 3] ***-번지 현장사진 및 종단면도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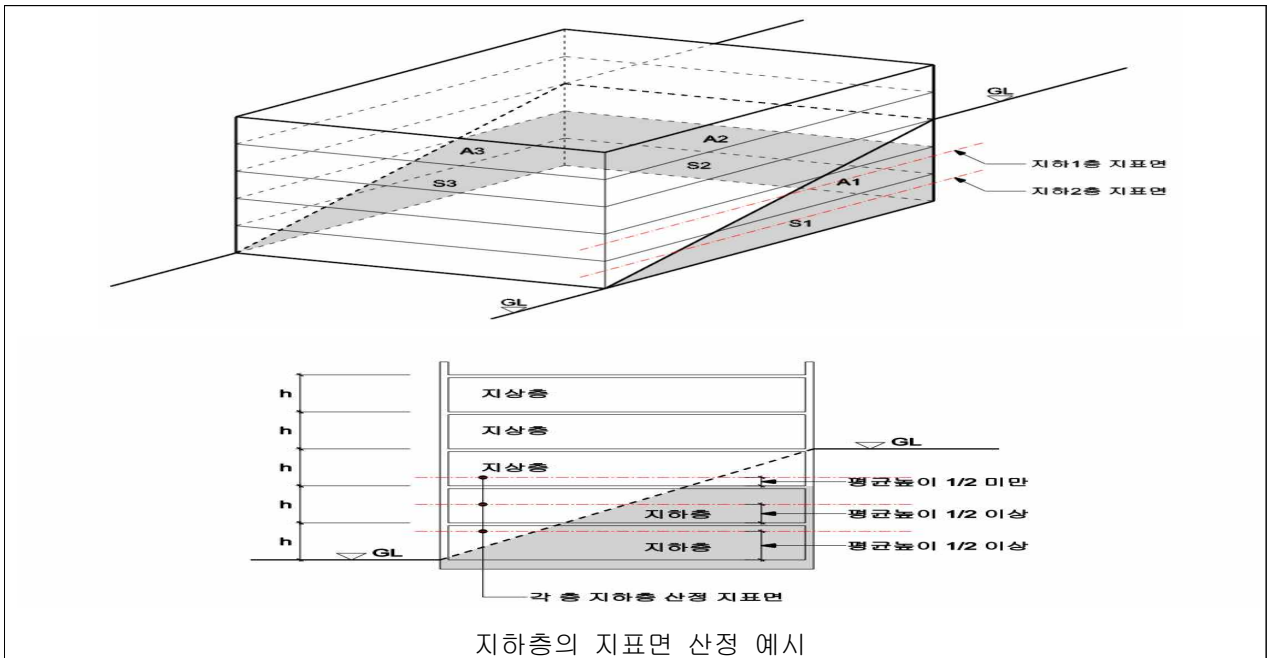
2. 건폐율 산정 부적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표면에서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 차가 있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을 위한 지표면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고저 차가 3미터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은 대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지의 고저 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산정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1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림 4]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그런데도 건축사 \$\$\$은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의 고저 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산정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1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3면이 지표면으로 덮여 있다는 사유만으로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반영하지 않고 건폐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구미시 가과에서는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적정한 검토 없이 건축사가 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대로 건축허가(변경)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구미시 ☁☁읍 ☁☁리 ***-번지 상 건축물의 경우 실제 건폐율은 28.83%임에도 19.61%로 산정하였고, ***-번지 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 건폐율은 35.98%임에도 19.74%로 산정하는 등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상한(20%)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건축허가(변경)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사용승인 처리 부적정

「건축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⁵²⁾을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손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대행을 맡은 건축사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허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52)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그런데도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star\star\star\star\$-신축허가-**), \$\$\$(\$\star\star\star\star\$-신축허가-**)는 허가 설계도서와 다른
옹벽의 위치이동과 구조변경(철근콘크리트조 → 보강토)이 발생하여 보강토 옹벽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을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 전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다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공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사(설계자, 감리자, 사용승인 검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 ❀❀❀❀❀❀❀ ❀❀❀❀❀❀❀”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생략”

1. 중소기업자 간 경쟁대상 용역의 발주검토 소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지질관련 용역에 한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⁵³⁾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53)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지질관련 용역에 한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 경쟁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대상 품목(1천만 원 이상의 지질조사) 비용이 계상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분리발주를 검토하여야 하나 지반조사 용역(추정가격 10,180천 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 참가 기회가 제한되었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⁵⁴⁾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5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①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발주청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의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제출서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의 부설시공 및 안전

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ㄱㄱㄱㄱㄱㄱ ㄱㄱㄱㄱㄱㄱ ㄱㄱㄱㄱ”를 추진하면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사로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공사금액⁵⁵⁾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ㄱㄱㄱㄱㄱㄱ ㄱㄱㄱㄱㄱㄱ ㄱㄱㄱㄱ”를 추진하면서

55) 공사금액 : 공사 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일체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장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사원가 과다계상 및 정산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를 추진하면서 PHC파일 구입(317본)을 관급으로 반영하지 않고 사급으로 반영하여 17,875천 원, 방수보호재 설치를 표준품셈 노무비 품보다 과다 적용하여 27,289천 원, 알루미늄 시트패널 및 복합패널 설치비를 조달청 시장시공가격보다 높은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5,726천 원,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를 견적단가로 적용하여 4,580천 원 등 사업비 68,409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그리고 가설울타리 설치 시 시공하지 않은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미정산하여 8,320천 원, PHC파일의 파일천공 및 항타 길이를 미정산하여 6,479천 원, 바닥 배수관 및 지수관 설치 물량을 과다 산정하여 2,161천 원 등 사업비 23,637천 원 (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정산 소홀 및 물량과다 산정으로 인한 사업비 23,637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23,637,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고, CCC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 ❀❀❀❀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구미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구미시 가과에서는 “❀❀ · ❀❀❀❀ ❀❀❀❀ ❀❀❀❀”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생략”

1. 수의계약 분할발주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통합 발주할 수 있는 단일 용역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특정 업체와 부당하게 1인 전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결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발주로 인하여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제1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이며 타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 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적용⁵⁷⁾하도록 하여야 하며,

- 98 -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해당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정한 공법으로 선정된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당초 신기술·특허공법(탈형테크플레이트)을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반영 후, 1회 설계변경 시 신기술·특허공법 변경에 대한 적정 여부의 판단 없이 일반공법(일반테크플레이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실제 현장은 별도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 없이 당초 반영된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시공하였다.

[표 2] 신기술·특허공법 추진 현황 “생략”

그 결과 공법 선정 절차 없이 신기술·특허공법(탈형테크플레이트)을 공사에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물가 변동액 반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아래 [표 3]과 같이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3]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에 대한 물가 변동액을 반영하면서 조정기준일(☆☆☆☆. ☆. ☆.) 이전에 완료된 가설시설물(RPP웬스,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 및 창고)에 대한 물가상승분 543천 원, 국민건강 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9,957천 원 등 사업비 10,500천 원 (제경비 포함)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였음에도 정산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걱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정산 소홀로 인한 사업비 10,5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사원가 과다계상 및 정산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 가과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를 추진하면서 흠막이 말뚝공사 중 케이싱을 미설치하여 1,073천 원, 경사버팀대 지지블럭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유로폼으로 설치하여 576천 원, 되메우기 시 설계도서와 다른 진동롤러 시공으로 698천 원, 단열재 시공방법을 설계도서와 상이한 타정부착으로 시공하여 6,560천 원, 자산취득비 집행항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1,110천 원, 미장공사 중 콘크리트면 마감을 부분마감으로 시공하여 2,437천 원 등 사업비 약 20,614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정산 소홀로 인한 사업비 20,614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31,114,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④ 관련자 BBB,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